

◆ 24년 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집 정오표. 개정내용 포함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오탈자 등은 제외

☆문제집 공통 : 교재에 사전 수록됨

↳영 별표1 위험물 명칭 개정 (시행 '24.04.30.) / 5류 지정수량 개정 (시행 '24.07.31.)

↳규칙 별표19 5류 위험등급 개정 (시행 '24.05.20.)

Page 17. 문제 10번 ④. 5류 개정으로 해설 수정. 정답 없음

Page 21. 문제 14번. 5류 개정으로 해설 수정

Page 60. 문제 61번. 5류 개정으로 해설 수정

Page 277. 문제 36번. 5류 개정으로 해설 수정

Page 403. 문제 45번. 5류 개정으로 해설 수정

Page 410. 문제 06번 ②④. 5류 개정으로 해설 수정. 정답 없음 (5류는 분류에 따라 정답 변동)

↳5류 분류 : 제1종 지정수량 10kg → 위험등급 I / 제2종 지정수량 100kg → 위험등급 II

Page 27. 문제 22번. 5류 개정으로 해설 수정

1. 위험등급 I  
라.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Page 36. 문제 32번. 5류 개정으로 해설 수정

◆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매년출제》《★장 23년》

위험물			지정 수량	위험 등급
유별	성질	품명		
제 5 류	자기 반응성 물질	내용 생략	제1종 10kg	제1종 I
			제2종 100kg	제2종 II

Page 44. 문제 42번. 개정으로 해설 정리 (정리 안 해도 무방 → 내용에 영향 없음)

Page 47. 문제 46번. 개정으로 해설 정리 (정리 안 해도 무방 → 내용에 영향 없음)

영 별표 1 비고 3. 개정 (시행 '24.04.30.)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Page 56. 문제 56번. 개정으로 제시문 및 해설 정리 (정리 안 해도 무방 → 내용에 영향 없음)

영 별표 1 비고 19. 개정 (시행 '24.04.30.)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Page 57. 문제 57번 ①②③④. 5류 위험물 명칭 개정 → 당해 문제의 해설과 같이 수정 요함

Page 68. 문제 69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Page 129. 문제 20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Page 499. 옥외저장소. 개정으로 수정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age 92. 문제 96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아.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이 경우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이동저장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Page 92. 문제 96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아.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이 경우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이동저장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4. 5. 20.》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Page 111. 문제 1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 각종 신고·신청·제출의 기한 / 업무의 처리기간		
민원업무	신고·신청·제출 기한 (민원인 의무)	업무 처리기간 (공무원 의무)
사용 중지신고 (→하반기 개정 예정)	14일 전 : 사전 신고 (→7일 전)	3일
사용 재개신고 (→하반기 개정 예정)	14일 전 : 사전 신고 (→3일 전)	〈개정 '24. 5.20.〉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 신청	• 지정받은 사항 변경 14일 이내 : 사후 신고	3일
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등 신청 〈개정 '24. 5.20.〉	• 휴업·폐업·재개업 1일 전 : 사전 신고	1일

Page 116. 문제 6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Page 118. 문제 9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Page 175. 문제 68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다만, 펌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age 154. 문제 45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4.30.)

Page 160. 문제 54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정답 없음

Page 332. 문제 15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 기술원 업무 위탁.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완공검사	
기술원. 탱크안전성능검사 〈★위 22년〉	기술원. 완공검사 〈★위 22년〉〈★장 23·17년〉
① 100만리터 이상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② 압반탱크저장소 : 용량 기준 없음 ③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이중벽탱크 : 용량 기준 없음	① 1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외 :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 ② 1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외 :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 ③ 옥외탱크저장소 :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 ④ 압반탱크저장소 : 용량 기준 없음

Page 162. 문제 56번. 해설 1번째 표안 내용 보완

지위승계 신고의 법상 의무자는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Page 167. 문제 60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 각종 신고 비교 <★위 22·21·19·16년><★장 20·18년>			
구 분	사용 중지·재개 (법 제11조의2제2항)	안전관리자 선임 (법 제15조제3항)	정기점검결과 제출 (법 제18조제2항)
처리기간	3일	즉시 (3근무시간 이내)	규정 없음

◆ 각종 신고 비교 <★위 22·21·19·16년><★장 20·18년>			
구 분	탱크시험자 중요 변경 (법 제16조제3항)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변경 (규칙 제57조 제5·6항)	
신고기한	30일 이내	지정받은 사항 변경 : 14일 이내 (사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 : 1일 전에 (사전 신고)	
처리기간	신규등록 15일	변경 3일	신규지정 10일
		변경 3일	휴업 등 1일

Page 177. 문제 71번. 제시어 오류 일부 삭제

71. 제조소등의 행정처분기준 1차에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Page 178. 문제 71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업무정지 = 과징금 無) (취소 = 청문 無)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규칙 제58조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7)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Page 213. 문제 26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수행 (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장 17년>

구분	주요내용
변경 신고 →과태료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내용변경 : 14일 이내 (=사후 신고)</li> <li>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 1일 전에 (=사전 신고)</li> </ul>

Page 215. 문제 28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 각종 신고·신청·제출의 기한 / 업무의 처리기간		
민원업무	신고·신청·제출 기한 (민원인 의무)	업무의 처리기간 (공무원 의무)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	지정기준 갖춘 후	10일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 신청	• 지정받은 사항 변경 14일 이내 : 사후 신고	3일
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등 신청 <개정 '24. 5.20.>	• 휴업·폐업·재개업 <b>1일 전</b> : 사전 신고	<b>1일</b>

Page 230. 문제 48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표 중 정기검사의 란 (시행 '24.05.20.)

1. 검사합격확인증 교부 : 10일 이내
2. 결과보고서 제출 : 10일 이내
3. 부적합개선 통보  
: 신청자 및 소방서장

Page 240. 문제 59번. 정답 누락 (편집 오류) → 정답 ②

Page 316. 문제 1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 시행규칙 [별표 24] 교육시간 란의 **이내 삭제**

Page 331. 문제 14번. 해설 수정 → 안전교육 관련 상·하위 법령의 조문 정리 등 (시행 '24.04.30.)

- ◆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안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강습교육)
    -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강습교육)
    -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실무교육)
  2. 기술원 :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실무교육)
- ②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나. 암반탱크
    -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이중벽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Page 332. 문제 15번. 해설 일부 오류 삭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  
↳기술원에 위탁하는 대상이나, 위탁하는 기준(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은 아니다.  
↳기준과 대상의 개념에 주의

Page 362~~~. **8장 공통 개정 → 일괄 수정 하기 바랍니다.**  
**(개념만 알고 있으면 힘들게 수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 방화문 <개정 '24. 5. 20.>

현재 교재의 내용	개정 내용
60분+방화문 (구. 감중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구. 감중방화문 또는 을중방화문)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Page 375. 문제 16번. **제시문 수정** (편집 오류. 문제 14번과 동일 제시어)

**16. 제조소에서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에 기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Page 397. 문제 41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2. 배관의 내압시험 (누설 등의 변형시험)

①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②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Page 401~448. 문제 17~22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 시행규칙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IX. 방유제

1.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유제 용량 (단위 : 이상) <★위 19년><★장 22·20·19·17·16년>

옥외 저장탱크 : 옥외탱크저장소			옥외 취급탱크
간막이 득	3류, 4류 및 5류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 (제외 : 이황화탄소)	비인화성 액체	: 제조소·일반취급소 (제외 : 이황화탄소) (제외 : 지정수량 1/5 미만)

◆ 방유제의 기준 비교 <★위 19년><★장 22·20·19·17·16년>

↳ ○ : 인화성이 있는 액체의 규정 동일 적용, ↳ × : 인화성이 있는 액체의 규정 미적용

옥외 저장탱크 : 옥외탱크저장소		옥외 취급탱크
3류, 4류 및 5류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 (제외 : 이황화탄소) : 기준이 되는 규정	비인화성	: 제조소·일반취급소 (제외 : 이황화탄소) (제외 : 지정수량 1/5 미만)

Page 409. 문제 5번. 5류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 옥내저장소 면적 및 지정수량의 배수 제한 등 《★장 17·13년》		
단층 건축물	다층 건축물	복합용도 건축물
바닥면적 <b>1,000㎡</b> 이하 ↳2 이상 구획실 창고는 합계 • 1~6류 위험등급 I 전부 • 4류 중 1석유류, 알코올류 • 5류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Page 512. 문제 4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주유설비 (차량연료탱크)	급유설비 (용기·이동탱크)	셀프용 주유설비 (차량연료탱크)	셀프용 급유설비 (용기)
휘발유 50ℓ 이하		휘발유 100ℓ 이하	
경유 180ℓ 이하		경유 600ℓ 이하 《개정 '24.5.20.》	
분당	분당	휘발유 4분 이하 경유 12분 이하 《개정 '24.5.20.》	6분 이하

Page 526. 문제 17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 ☼ 주유량 상한 및 주유시간 상한
  - ↳ 휘발유 : 100ℓ 이하, 4분 이하
  - ↳ 경유 : 600ℓ 이하, 12분 이하

Page 546. 문제 1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5.20.)

◆ 일반취급소. 특례 15종 요건			
특례 명칭	취급 위험물 및 시설 등	배수 제한	비고
반도체 제조공정 《신설 '24. 5. 20.》	규정 없음 ↳1~6류 모두 취급 가능	규정 없음	건축물에 설치
이차전지 제조공정 《신설 '24. 5. 20.》	규정 없음 ↳1~6류 모두 취급 가능	규정 없음 (건축물 단위 허가) 30배 미만 (실 단위 허가)	건축물에 설치

◆ 소화난이도등급 구분 (규칙 별표 17) 《★장 18·13년》

구분	소화난이도 등급 I	소화난이도 등급 II	소화난이도 등급 III
일반취급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 (=특례의 보유공지 미적용 대상) (=실 단위의 허가 대상)</li> <li>*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완전구획, 틈이 없는 구획)</li> <li>↳ 화학실험</li> <li>↳ 고인화점 위험물 +100℃ 미만 온도취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무도장작업</li> <li>↳ 세정작업</li> <li>↳ 열처리작업</li> <li>↳ 보일러등 소비</li> <li>↳ 절삭장치</li> <li>↳ 열매체유 순환장치</li> <li>↳ 유압장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전하는</li> <li>↳ 옮겨담는</li> <li>↳ 반도체</li> <li>↳ 이차전지</li> <li>↳ 발전소·변전소</li> <li>개폐소</li> </ul> </li> <li>• 등급 I·II 외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인화점 위험물 +100℃ 미만 온도취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실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외 (상기란 공통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인화점 위험물 +100℃ 미만 온도취급</li> </ul> </li> </ul>	

◆ 예방규정 이행실태평가 관련 영·규칙 개정 '24.7.2.·시행'24.7.4.

Page 158. 문제 51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7.04.)

◆ 시행규칙 제11조(공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5. 예방규정(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로 한정한다)

Page 220. 문제 34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7.04.)

◆ 시행령 제15조(예방규정) <②항 신설 '24. 7. 2.><시행 '24. 7. 4.>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7. 현행 동일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Page 227. 문제 45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7.04.)

◆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예방규정 대상
- 2~4. 현행 동일

◆ 흡연장소 지정·표지 관련 영 신설 '24.7.23.·시행'24.7.31.

Page 114. 문제 4번. 신설로 해설 수정 (시행 '24.07.31.)

Page 330. 문제 14번. 신설로 해설 수정 (시행 '24.07.31.)

◆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명령 <신설 '24.07.23.」>(시행 '24.07.31.)

Page 115. 문제 5번. 신설로 해설 수정 (시행 '24.07.31.)

◆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위 22·15년><★장 23·17년>

↳법 제30조 ↳권한의 위임 : 영 제21조 ↳업무의 위탁 : 영 제22조

구분, ● : 권한자 ↔ 위임·위탁	서장	본부장	시·도지사	청장	기술원	안전원
◎ 동일 시도 + 2 이상 서장 + 이송취급소 →아래 ①~⑭의 허가 등 권한			● 위임 불가			
①~⑬(현행과 같음)						
⑭ 금연구역 표지 지정명령 <시행 '24.07.31.>	위임		●			

Page 237. 문제 56번. 개정으로 해설 수정 (시행 '24.07.31.)

◆ 시행령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 **24년 ~ . 법령 개정 예정**

- 제조소등 흡연 금지 : 법 제19조의2

⇒ '24. 7. 31. 시행

⇒ 규칙 개정

- 사용 중지/재개 신고일 완화 : 법 제11조의2

⇒ '24. 하반기

- 정기점검 대상 확대 : 법 제18조

⇒ '24. 하반기

- 위험물 안전협회 설립 근거 마련

⇒ 신설 '24. 2. 20.    ⇒ **시행 '25. 2. 21.**

- 위험물시설 점검업 도입

⇒ **'26년 시행 예정**

\*3천배 이상 : 제조소, 이송·일반·주유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